

2025년 경남투자청 투자유치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

모집개요

- 접수기간 : 2025. 9. ~ 2025. 11. ※ 예산소진 시까지 선별 지원
- 지원대상

-FDI 기업

- 당해연도(2025년)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하고 외국인투자신고(INSC)를 완료한 기업 또는 당해연도 이전(2025년 제외)에 외국인투자신고(INSC)를 완료한 외국인기업*

* 당해연도 이전(2025년 제외)에 외국인투자신고(INSC)를 완료한 외국인기업의 경우 사후지원 항목에 한하여 지원

-국내 기업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의 하는 중소기업

-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필수서류 이메일(investgn@giba.or.kr) 제출
- 지원규모 ([※ 예산 한도 내에서 협의 후 지원 예정](#))

-FDI 기업

- 당해연도 설립증자 및 외국인투자 신고(INSC)를 완료한 외국인투자기업
→ 총액 기준 최대 1,000만원 이내 지원 가능
- 당해연도 제외, 외국인통계시스템(INSC)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
→ 총액 기준 최대 300만원 이내 사후지원 가능

-국내 기업

- 국내기업은 최대 500만원 지원

지원내용

- FDI 기업

구분	내용	세부내용	지원내용	
F D I 기 업	사전 지원	사전 마켓리서치	- 경남 진출을 위한 사전 마켓 리서치 컨설팅 비용지원 (시장조사, 법률자문, 정보수집 등) ※ 증액투자 제외	최대 500만원 지원
	투자 지원	법인설립 및 증자	- 투자규모에 따라 법인설립 및 증자 법무 비용 기본보수 실비 지원 ※ 대한법무사협회(KABL) 법무사 보수표 기준	최대 300만원 지원
		IR 컨설팅	- 발표 자료 구성 등 제작 지원	
	경영 지원	노무 컨설팅	- 자문(근로기준법,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, 노동조합 등) - 컨설팅(노무 분쟁, 사건대리 등) - 노무 교육(법정의무교육 시행 및 안내 등)	최대 1,000만원 지원
		구인 컨설팅	- 인재 탐색 및 추천 - 인재 검증(국내외 학력, 경력 및 평판 조회) - 커리어 컨설팅 및 코칭 등	
		법률 컨설팅	- 회사일반(정관, 기존 투자자들과의 계약사항 등) - 무형자산/보험/분쟁(법률·계약상 제한사항, 지재권 관리	

		주요 분쟁사항 등) - 영업/거래(계약서 검토, 리스크 관리 등)	
	세무·회계 컨설팅	- 세무/회계 및 감사 관련 자문 - 세무기장(부가가치세/법인세/종합소득세 신고 등) - 사업계획서 검토	
	지재권 컨설팅	-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, 지식재산권 등록 등	
	비자, 비즈니스 컨설팅	- 비자 발급 서비스 전문 컨설팅 -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및 연계 상담 - 비즈니스 모델 성장 전략 솔루션 제공 등	
기반 지원	사무실 임차	- 글로벌부동산업체 정보제공 및 사무실 임차료(월세) 지원	
	인허가 컨설팅	- 인허가, 국내 규격 인증 등 수수료, 컨설팅 비용 지원	
	마케팅	- 홍보물 제작, 온오프라인 홍보, 전시회 참가, 고객 모니터링 등 마케팅 비용 지원	
	디자인 컨설팅	- 시각디자인(제품, 패키지, 브랜드 등) 개선 비용 지원 - 전문가 멘토링 지원	
사후 지원	후속 투자유치	- 투자지원, 경영지원, 정착지원, 기반지원 中 택1 ※ 당해연도 제외, 외국인통계시스템(INSC)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	최대 300만원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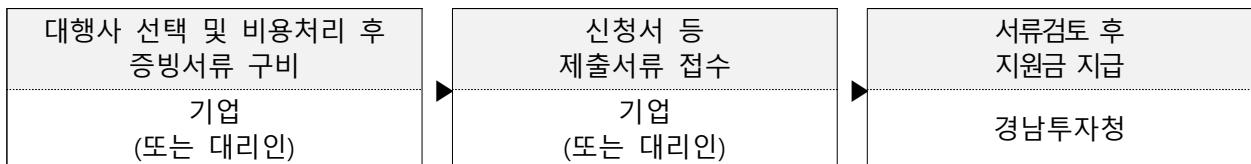
- 국내 기업

구분	내용	세부내용	지원내용
국 내 기 업	투자 지원	IR 컨설팅 - 발표 자료 구성 등 제작 지원	최대 500만원 지원
	기반 지원	디자인 컨설팅 - 시각디자인(제품, 패키지 등) 기획·변경·개선 비용 지원 - 전문가 멘토링 지원	

신청서 다운로드

- 경로 : 경남투자경제진흥원(<https://giba.or.kr>) → 사업공고 → 사업신청서 다운로드

지원절차



문의처

- 담당자 : 오지연 PM
- 소속 : 경남투자경제진흥원, 경남투자청, 투자지원단
- 연락처 : 055-230-2854 / wldus12@giba.or.kr

신청서류

1. 공통 제출서류

-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❶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
❷ 기업 통장
❸ 기업 법무 등기부등본 | ❹ 기업 사업자등록증
❺ 외투기업등록증 (FDI 기업인 경우)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+ 증자는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제출 필수이며 ❻번은 제출하지 않음

2. 사전지원(시장조사/법률/정보수집)제출서류 ※ FDI 기업만 해당

- ❻ 서비스 계약서 또는 견적서
- ❼ 서비스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
- ❽ 서비스 이용 결과보고서(성과물 등 첨부)
- ❾ 서비스비용 이체확인증(외투기업→서비스업체) 및 영수증

3. 투자지원(법인설립/증자/IR 컨설팅) 제출서류

- ❻ 법무대행/컨설팅 계약서 또는 견적서
- ❼ 법무대행/컨설팅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
- ❽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
- ❾ 법무비용 이체확인증(외투기업→서비스업체) 및 영수증

4. 경영지원(노무/구인/법률/세무·회계/지식재산권/비즈니스) 제출서류 ※ FDI 기업만 해당

- ❻ 서비스 계약서 또는 견적서
- ❼ 서비스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
- ❽ 서비스 이용 결과보고서(성과물 등 첨부)
- ❾ 법무비용 이체확인증(외투기업→서비스업체) 및 영수증

5. 정착지원(사무실 임차지원) ※ FDI 기업만 해당

- ❻ 임대차 계약서 ※사무실은 외투기업 명의여야 함
- ❼ 임차비용 이체확인증
- ❽ 임차비용 이체 통장

6. 기반지원 제출서류

- ❻ 서비스 계약서 또는 견적서
- ❼ 서비스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
- ❽ 서비스 이용 결과보고서(성과물 등 첨부)
- ❾ 서비스비용 이체확인증(기업→서비스업체) 및 영수증

7. 사후지원 서류 ※ FDI 기업만 해당

※ 3번에서 6번 중 해당하는 서류

※ 필수서류를 전부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되며, 미제출 시 접수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.

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의 결정에 따릅니다.